

- 특정 범주의 장애로 확인된 사람들은 판에 박힌 대로 획일적으로 인식되었다.
- 기존의 분류 체계는 주류사회로부터의 분리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의를 만들어 내는 주류사회의 가치가 갖는 의미가 전적으로 간과되었다.
- 정상적으로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라는 관점에서 인식되었으며,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는 아주 다르게 취급되었다.

새로운 접근의 발달은 장애인을 확인하는 보다 유익한 방식을 찾는 노력이 수반되었다. 가장 궁정적인 시도 가운데 하나는 미연방법에 반영되어 있는데, 인간을 범주와 라벨(labels)로 정의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인정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래의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 자기 돌봄(self care)
- 언어 이해와 표현
- 학습
- 이동
- 자기 관리(self-direction)
- 독립생활능력
- 경제적 능력

이러한 접근은 개인적인 결함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던 것을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는 개인적·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 제 3 절 현대적 접근들 : 핵심 이념

#### 1.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손상의 결과인 그들의 장애를 줄이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는 법적 권리와 인권으로 대별되는데 이러한 법적 권리와 인권의 네 가지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시민권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지,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 권리는 법률과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판결에 의해서만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다.
- 사회는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 권리는 사회 구성원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행동 방식에 제한과 책임을 부과한다.

장애인들의 권리란 무엇인가? 이것에는 이를테면 자유, 성장과 성숙, 개별화, 독립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된다. 아래의 항목들은 포함적이지는 않지만, 오늘날 장애인의 보다 적절한 삶에 대한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은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장애인은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통제할 권리
-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
- 자유
- 사회의 도덕적 자유를 누릴 권리
-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 권리
- 개인적인 박탈과 신체적 위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선택의 자유, 모험을 할 자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할 권리
- 장애의 결과를 감소시키는 원조(assistance)를 받을 권리
- 능력 있고 긍정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직원에 의해 도움을 받을 권리
-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리

## 2. 발달 능력

장애인은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으며, 생활 양식을 경험하고 그들이 배우고 성숙하는데 필요한 모든 원조를 받아야 한다.

발달적 접근은 장애인이 성장·발달·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장애인이 가진 능력은 다른 사회 구성원의 능력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이고 친밀한 관계
- 정상적인 사회화 과정의 경험
- 발달하기 위한 책임·자극·기대를 포함하는 생활 양식
- 정상적이고 적절한 역할 수행
- 정상화된 환경에서의 생활
- 주류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사건들에 대한 경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숙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가는 개인적인 특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그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맥락에 달려 있다. 정상적인 아이라도 예를 들면 효과적인 사회화와 학습이 부정되는 환경에서 자라면 발달이 제한될 것이다.

장애인은 그들이 삶이 주류 사회와 통합되고, 과거의 실천들이 부과했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때에만, 그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은 발달적 접근은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합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

- 모든 장애인이 성장과 발달을 위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시각
- 장애인에게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경험 제공
- 연령에 적합한 행동에 대한 격려와 조력

### 3. 독립과 클라이언트의 선택

장애인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삶을 통제하고, 선택하고, 독립적으로 될 권리가 있다.

장애인과 관련된 독립에 대한 이념은 그들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의해 그들의 삶을 통제할 자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들이 기능장애에 의해 어떠한 손상을 입은 상태에 있다면, 그들이 받는 원호는 타인에 대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의존으로부터 자유로운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독립이란 아래의 의미를 지닌다.

-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 독립 행동과 선택에 관련이 있는 책임을 획득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 독립적인 행동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키고 확대시키는 상황에 참여해야 한다.
- 적절한 이동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 평등과 책임 공유를 토대로 원조자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외모를 비롯한 생활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더 많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거 시설의 원조자들은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그들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특히 그들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지녔던 힘과 관련하여, 과거 접근 방식의 특징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그들이 제공하는 도움은 그것이 성숙과 독립적인 행동을 향한 성장을 방해할 만큼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들의 통제와 지원은 독립이 증가하면 감소되어야 한다.
-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에게 있어서 독립이란 결코 총체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욕구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독립적인 행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독단적인 행동과 때로는 커다란 갈등을 포함한다.
- 어려움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쪽에서의 자의적인 행동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협상과

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 4. 정상화와 통합

장애인의 생활 양식과 그들이 받는 원조는 정상화의 원리와 일치하여야 한다.

정상화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상화의 원리는 크게 잘못 이해되거나 해석되고 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서비스 제공과 새로운 형태의 도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현재의 결함을 확인시켜 주는 중심적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이 개념은 장애인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설명이다. 그것은 장애인들에게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누리고 있는 생활을 위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하나의 이념으로서 정상화는 <장애인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정상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행위의 기반으로서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 1) 삶의 방식으로서의 정상화

장애인은 아래의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성숙으로부터 성숙에 이르는 발달의 정상적인 유형을 따라야 하며, 어린아이 같고 의존적인 상태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공휴일과 계절 활동을 즐기면서 한 해를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간활동을, 저녁 시간과 주말은 다른 여가 활동을 하면서 1주일을 정상적으로 보내야 한다.
- 정상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일반 학교에 가고, 일을 하거나 다른 주간 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정상적으로 보내야 한다.
- 가능한 한 가정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한다.
- 사회의 구성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실천적인 수준에서 정상화는 다음에 의해 추구되고 성취되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적합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모든 측면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외모가 통합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집단적인 명명(label)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를 사회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서비스와 도움의 형태는 피해야 한다. 이를테면 주거, 교육, 일, 여가와 의료 배치가 특별해서는 안 된

다.

장애인의 생활을 정상화한다는 것이 많은 장애로 인한 손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그들을 제한시키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이 부인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는 정적이고 선행 평가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보다 정상화시킬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발달 잠재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간주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정상화된 생활을 획득하려고 노력할 때, 원조자들은 아래의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실천의 장이 어디이든 간에 클라이언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들의 동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 원조자들은 정상화의 목표를 추구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이 크게 비정상적이지는 않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 개인과 집단을 위한 정상화는 추구해야 하는 것과 추구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한계는 클라이언트의 소망, 장애에 의해 부과되는 내재적 한계, 혹은 변화와 개선을 불러일으키려는 계속적인 과정의 비정상적 속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 많은 장애물들이 극복되기 때문에, 원조자들은 보다 더 큰 정상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기도 한다.

## 2) 행동을 위한 토대로서의 정상화

정상화와 통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헬퍼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적합한 생활 형태를 제공하는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아래의 요소들에 의해 장애인들이 인식되고, 정의되고, 취급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일에 관계하게 된다.

- 사회일반
- 법률
- 정부 부처
- 가족
- 고용주
- 동료
- 다른 장애인

이것은 아래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

- 장애인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개념들을 변화시키려고 활동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 정상화의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 접근과 신념을 제안할 때는 도전해야 한다.
- 장애인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사회와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 5.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장애인을 위한 원조 형태에 대한 맥락은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제한적 대안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장애인의 안녕과 생활양식에 대한 제한과 봉괴가 가장 작을 때, 환경이나 맥락이 최소한의 제한적 상태라는 것이다.

### [그림2-1] 제한을 최소화하는 대안 찾기

#### 단계1

클라이언트 전반적인 욕구에 대한 평가와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진술



#### 단계2

클라이언트에게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하기



#### 단계3

단계와 단계 사이의 균형 찾기와 무슨 맥락이 최소한의 제한인지 표시하기



#### 단계4

클라이언트의 현재 생활상을 조사하고, 단계3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단계5

필요한 경우 현재의 환경을 약간 제한적으로 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이 개념은 주거시설과 관련하여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장애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집과 지역사회로부터 제거되어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서비스는 집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거나 지역사회 안에 있는 집과 같은(home-like) 시설에서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념은 이를테면 정상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추구되어야 하는 교육·건강·일·여가와 같은 다른 삶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최소한의 제한적 대안이라는 개념은 서구사회의 인간의 자유와 동일한 높은 가치를 반영한 것인데, 미국에서 법률 노선(doctrine)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그것의 일차적 기능은 정부 기관이 장애인으로부터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케

어의 보호적인 형태와 수용과 제한의 불필요한 사용에 대한 비판을 의도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실천적으로는 거대하고 집단적이고 제한적인 주거형태에 기반하는 서비스로부터 보다 통합되고 보다 작은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서비스로의 이동을 가리킨다.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의 결정에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그들의 욕구와 사회적 행동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포함된다(그림 2-1 참조요). 제한 부과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그것이 사회적 보호 차원에서 혹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취해져야 한다.

### 제 3 장 서비스 계획의 기초

장애인 서비스의 현대적 접근은 장애인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무엇이던 간에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용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서비스는 현존하는 서비스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늘날의 많은 서비스들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장애인에 대한 현대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
- 확인된(identified) 욕구와 관계가 거의 없다.
- 주거 공급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특히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아래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몇 가지 폭넓은 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할 서비스의 종류
- 만약 합리성에 기초하여 폭넓게 수립된 서비스 계획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이득을 거의 얻을 수 없는 도움의 특정 형태들
- 포괄적이고 조정된 서비스들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과정

여기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로 획득되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자선단체·자원봉사단체·시민단체 등이 각기 따로 주도권을 행사해온 결과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조각 조각으로 발달해온 사회에서는 계획수립·합리화·발달을 지향하는 운동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실제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의 여부는 아래와 같은 선 행 변화들(조건들)에 달려있다.

-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사회적·정치적·전문적 인식의 확대
- 장애인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이해의 확대
- 사회의 한 구성원인 장애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을 늘려 할당하려는 사회의 태도
- 현재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organizations)들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 제 1 절 서비스 : 계획수립의 기본 틀

과거에는 서비스의 대부분이 시설 중심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이것을 다음을 의미한다.

- 접근에 있어서 무한한 편차
- 가족 구성원인 장애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족들의 지리적 이동, 그리고 그에 따른 자연적 지지망의 붕괴
- 가족들이 주거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되는 경우, 장애인과 가족들 사이의 빈번한 접촉의 상실
- 주거시설에 입소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현대적 접근에 내재되어 있는 원칙들은 이와는 다른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서비스 계획수립과 전달은 탈중심적이어야(decentralized) 하며, 지역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시설중심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결함을 인정함과 아울러 지역화(regionalisation)는 다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 장애인의 욕구는 그들의 가족과 자연적인 공동체의 맥락에서 원조되어야 한다.
- 지역적 차이에 따라 지역의 욕구를 반영하는 계획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 보다 작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시스템은 보다 유연할 수 있다.

포괄적인 서비스 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조정되고(co-ordinated), 합리적이며, 전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상호 이해와 관심사를 논의하고, 또한 특정한 과제들과 자원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을 찾기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모임으로써 이러한 방향으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 인식을 필요한 정도까지 발달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계획수립과 서비스 전달을 위한 적절한 지역단위(areas)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단위로는 우선 첫째로 광역지방자치단체(state)나 기초지방자치단체(county)가 될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 대상 인구수에 따라 대도시의 경우에는 동(districts),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읍·면(region)이 될 것이다. 이들 지역단위가 어떻게 그려지던 간에,

- 도시의 경우에는 지역단위가 폭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정당화할 만큼 클라이언트 인구수에서 보면 클 수 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가족들이 지역사회 중심 형태의 도움을 이용하고자 할 때, 집에서 편안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가 작아야 할 것이다.
-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단위가 가족상담과 지원, 그리고 긴급·단기·장기 거주보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다 작은 다목적 기관들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아래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수립 과정이다.

-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범위
-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가

- 서비스는 어디에 기반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포괄적인 서비스 전달 계획은 그 형태가 어떠하던 간에

- 지역사회 중심적이어야 한다 - 주류사회속에서
- 탈중심적이고 지역화 되어야 한다 - 가능한 한 클라이언트의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
- 포괄적이어야 한다 - 확인된 욕구의 전체 범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유연해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수정될 수 있도록
- 욕구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지불 능력 등을 근거로 어떠한 차별(distinction)도 있어서는 안 된다.
- 합리적이어야 한다 - 욕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
- 지속적이어야 한다 - 서비스가 필요한 한 계속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체계적이어야 한다 -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이나 빈틈이 없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정상화되어야 한다 - 정상화 원리와 최소한의 제한적 대안이라는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기준들과 일치하여야 한다.
- 질이 높아야 한다 - 능력 있는 종사자들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인격이 존중되어야 한다 - 사회적으로 낙인(stigma)을 찍거나 자선의 형태로 제공 되어서는 안 된다.

## 제 2 절 욕구 평가

확인된 욕구에 관련된 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은 이 책을 통해 내내 자주 언급될 것이다. 어쨌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욕구를 확인하거나 평가하고자 할 때 간단하고 의존할 만한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욕구라는 개념은 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욕구는 아주 편협하게 평가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주 자주 욕구는 단순하게 시설 보호의 필요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편협된 초점은 자격증명(reference) 구조(frame)나 원조기술이라는 점에서 극도로 제한된 전문가 집단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로 전문가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의해 평가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은 예를 들면 사회사업원조(social work help), 직업치료, 혹은 심리검사와 같은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동일시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탐색의 한 결과는 욕구라는 개념의 확대와 발달이다. 이제는 욕구 결정 과정이 복합적일 뿐만 아니라, 욕구를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 클라이언트와 가족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욕구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을 수 있다.
- 종사자들은 그들이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라고 믿고 있는 바를 표시할 수 있다.
- 서비스 공급의 이상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며, 그것과 관련하여 욕구가 평가될 수 있다.

- 최소 기준이 욕구 평가에 사용될 수 있다.
- 욕구가 현존의 서비스 공급이나 생활 양식, 즉 비장애인인 다른 사람들이 받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과 관련시켜 평가될 수 있다.

욕구를 평가하는 하나의 방식은 그것 자체가 다른 방식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각각의 접근은 서로 다른 출발점으로부터 요구를 조사하며, 그럼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한다. 욕구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주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사용되고 있는 욕구에 대한 개념과 그 개념이 보유하고 있는(obtained) 정보를 제한하고 유형화하는 방식
- 포괄적인 욕구조사에 클라이언트 욕구 사정을 비롯한 수많은 접근들을 포함시킬 것인지.
- 클라이언트들의 확인된 욕구와 그들의 인정된 권리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 특별한 클라이언트들과 가족들을 위한\* 욕구 사정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생활 상황에 적절해야 한다.
- 욕구는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지 않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
- 클라이언트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들의 욕구를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들이 특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해줌으로써, 서비스 공급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상향시킬 수 있다.

### 제 3 절 포괄적 계획상의 서비스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전체 영역은 건강·교육·고용 분야를 비롯한 수많은 기관과 조직들에 의해 제공될 것이다. 아래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회복지 대인서비스 기관들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것들이다. 서비스 계획수립에 관련된 팀들은 서비스 제공이 전반적인 통합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집단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1. 부모들에 대한 직접 서비스

- 상담 : 부모들이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가족 생활과 사회 생활을 영위할 때 자주 겪게 되는 정서적 스트레스와 변화들을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 정보제공과 의뢰 : 장애 아동의 보호에 관련된 실천적인 지도와 서비스 이용가능성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 부모교육 :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이해하고, 돌보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획득하는데 있어서 자녀를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 부모 지지 집단 : 보다 더 많은 이해와 기술을 발달시키고, 문제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고, 그리고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는 압력 집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포함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 재정적 그리고 물질적 지원 :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 필요한

## 부가적인(additional)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 2. 장애인 친족(relative)을 가진 가족에 대한 서비스

#### 1) 재가 서비스

- 세탁 서비스 : 주로 대소변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 가사 : 보호자가 장애를 가진 자녀나 친족을 돌보는데 시간을 너무 빼앗겨 할 수 없는 가사를 돌봐주기 위하여
- 장애인 개인을 위한 개별적인 도움 : 특정한 간병(nursing tasks), 또는 목욕이나 운동 등과 같은 개별적인 보호(care)가 여기에 포함된다.
- 동료(companion) 서비스 : 전일제 보호자(full-time carers)가 집을 떠나 있을 수 있도록 짧은 기간동안 장애인을 돌봐주기 위하여
- 가정 중심 프로그램 : 종사자들이 장애인과 보호자의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가정을 방문하는 것
- 집안 개조 : 보다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예를들면 승강기나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1층에 욕실을 마련하는 것
- 보장구(aids) : 일정 범위의 보장구, 예를들면 기중기(hoists), 휠체어, 장난감, 특수 가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 2) 집 밖에서의 서비스

- 교통 : 클라이언트들과 가족들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보다 충실히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주간 보호 : 놀이집단(playgroups), 놀이방, 보모(child minders), 성인훈련센터, 주간 위탁(fostering)
- 여가 활동 : 개별 및 집단 참여를 포함한다.
- 긴급 주거 보호 : 가족 보호에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 야간(overnight) 보호 : 가족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 단기 원조(relief) : 휴가 기간, 주중, 혹은 주말 보호
- 주거시설에서의 장기 보호 : 클라이언트 계획에 상술되어 있는 특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 3. 친(natural)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아동의 보호

- 입양 :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에게 아동을 영원히 맡기는 것
- 위탁 : 재정적인 대가를 받으나 아동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아동을 맡기는 것
- 집단 위탁 : 아동을 집단적으로 위탁 시설(setting)에 맡기는 것
- 전문가(professional) 위탁 :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개인들에게 봉급을 주고, 그들의 집에서 중증 장애인이나 행동에 만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돌

## 보게 하는 것

### 4. 성인 장애인을 위한 주거 시설

- 하숙(lodgings)
- 호스텔(hostels)
-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 시설
- 특수 주거 시설

### 5. 성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 상담과 의논(consultation)
- 세탁 서비스
- 가사 서비스
- 개별화된(personalized) 도움과 개인을 위한 도우미(attendants)
- 가정 요양(nursing)
- 가정 중심 프로그램
- 집안 개조
- 보장구
- 재정적 지원
- 교통
- 고용 혹은 기타 주간직업활동
- 주간 보호
- 재활 서비스
- 긴급 주거 보호
- 여가 활동

### 제 4 절 서비스 공급 : 주거시설의 역할

포괄적인 서비스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양한 주거 시설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거 시설들의 운영 목표와 방식은 아래 사항에 따라 다를 것이다.

- 필요로 하는 지원의 성격과 정도
- 주거 시설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
- 기간

그리고 수많은 일반 원칙들이 시설의 기능이 무엇이던 간에 주거시설의 이용에 적용되어야 한다:

- 주거 시설은 명확하게 정의된 필요의 결과로서 이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거시설이 마지막 휴식처로 간주되거나, 다른 모든 형태의 도움을 다 써버린 뒤에만 이용되어는 안 된다.

- 클라이언트는 스스로 어떤 주거시설에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이용자들은 시설이 제공하는 원조와 보호가 필요한 기간 동안만 주거시설에 머물러야 한다.
- 계약서에는 주거 공간의 제공과 거주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법적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한다.
- 대다수 장애인을 위한 주거는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일반 가정과 같아야 한다. 즉 그것은
  - 주거 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 다른 일반 사람들의 집과 같아야 하며
  - 교육, 작업, 건강, 여가 등 클라이언트 욕구를 총체적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주거 시설에서의 일상생활 형태는 개인 기술을 발달시키고 성숙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짜여져야 한다.

## 제 4 장 향후의 과제와 맺는 말

본 고에서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현대적 운영원칙, 현대적 운영원칙에 입각한 점검요소들과 이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였다. 현대적 운영원칙에 관련된 요소들은 총론적인 차원에서 개별 장애인 시설의 전체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유하여야 할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은 우리나라 시설의 현장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적 제약들로 인하여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도적 여건들도 큰 맥락에서 보면 점차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시설 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진적인 변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단기적인 차원에서 개별 시설들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이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의 일들을 할 수 있다.

- 현재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에 대한 재점검
- 기관 운영 기본 가치의 명확화
- 사용하고 있는 욕구에 관한 개념들에 대한 확인
-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 모색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의 경우, 당면 목표는 아래 사항에 대한 계획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사전접수 시스템의 구축

- 기존의 시설 내에서 소규모 주거 시설이나 공동생활 형태로 재편하기
- 개별화 계획 개발
- 직원이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제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 지역사회 참여의 확대
- 도움을 주는 방식을 장애인의 욕구와, 가족들의 욕구와 일치시키는 것
- 보호의 목적과 바람직한 실천 방안을 문서화하기
  - 전반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 내에서의 시설의 역할
  -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집단
  - 장애인들을 위해 추구해야 할 일반 목표
  - 장애인의 권리
  - 가족과 그들의 주거 생활에의 관여와의 관계
  - 바람직한 보호와 지양해야 할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
  - 의사결정에의 장애인 참여
  - 공식적인 고충처리 시스템

이러한 일들은 개별 시설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되고, 실천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시설차원의 노력과 동시에 제도적인 여건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주거서비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규정에 대한 변화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생활시설의 종류에 가칭 ‘지역사회생활시설’을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대규모 시설로는 현대적 서비스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현재의 규모에서 현대적 서비스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하여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거주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생활시설은 현재의 그룹홈과 같은 형태의 주거지를 10개 정도로 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마련되어 10여개의 그룹홈(총 생활인원 40여명)과 1개의 지원센터가 하나의 지역사회생활시설로 구성되는 형태를 만드는 일이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로 이동 거주하는 것이 적합한 거주인들은 대부분 지역사회생활시설로 주거장소를 옮기고, 현재의 생활시설들은 요양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로 변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생활시설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생활시설, 요양시설, 영유아시설에다 새로이 지역사회생활시설이라는 종류를 추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시설들에서는 점차적으로 거주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이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김용득 · 오승환 · 임성만(2000). 정신지체인 생활시설 사업과 운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김용득 · 유동철(2001).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인간과복지

정미애(2001). 일본의 공적 사회복지 공급주체로서의 NPO.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소 discussion paper 01-2. 2001.

Tully, K.(1993). Improving residential life for disabled people. Churc

## 부록

### 주거시설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질문들

다음에서 제시되는 각 문항의 내용들은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구체적인 질문형

태로 나열한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연구자료의 검토에 앞서서 본 항목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래의 각 문항들은 생활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 주요 내용들은 긍정적인 해답이 있다면 바람직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아래의 항목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여건이나 상황으로 인하여 적용시키기 곤란한 항목들을 구별해 내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해당 생활시설이 적용이 가능한 문항들만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문항들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다. 각 항목별 요소들에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이 항목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부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개선을 요하는 상태일 것이다.

셋째, 부정적인 답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항목들에 대하여 개선대안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영역의 개선이 필요한지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 1. 기본적인 철학

1. 클라이언트들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성장과 발달이 가능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는가?
3. 주거 시설이 성인 클라이언트들에게 유아기의 생활 스타일을 부과하는 실천들로부터 자유로운가?
4. 클라이언트들이 환자라기보다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선택하도록 격려되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가?
7. 주거 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의 생활 스타일과 생활 유형이 정성화의 원리와 일치하는가?
8. 주거 시설은 지역사회 속으로 통합되어 있는가?
9.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제한이 최소화된 맥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가?
10. 주거 시설은 클라이언트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라벨들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름들로부터 자유로운가?
11. 원조제공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12. 원조제공자는 주거 시설에서의 생활 유형이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가?

## 2. 서비스 기획

1. 주거 시설은 전반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계획의 한 부분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가?
2. 이용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확인할 때 수많은 접근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특정 장소에서 조사되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주거 보호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가?
6. 주거 시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원조의 특정 형태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7. 주거 시설에서의 클라이언트들의 주거 기간은 그(녀)의 욕구와 관계가 있는가?
8. 주거 시설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과 장비 등과 같은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가?
9. 주거 시설은 클라이언트들과 가까운 친척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는가?
10. 시설 종사자들은 그들이 좋은 실천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가?

### 3. 인테이크

1. 주거 시설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인테이크 과정에 따라 작동하는가?
2. 주거 시설이 클라이언트의 입소를 요청 받았을 때 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가?
3. 주거 시설은 인테이크 회의에서 인정된 욕구를 지닌 클라이언트들만을 받아들이는가?
4. 인테이크 회의에 원조를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들이 참여하는가?
5. 입소자 명단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6. 주거 서비스를 위한 대기자들의 욕구는 우선순위화 되어 있는가?
7. 긴급 입소 요청에 대처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가?
8. 주거 시설은 클라이언트들을 위한 사전 배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가?
9. 입소 당일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응접은 적합하게 계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주거 시설에 입소한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처음 몇 주 동안 그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

### 4. 개별 계획수립

1. 모든 원조제공자들이 개별 계획수립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
2. 주거 시설에 개별 계획수립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 개별 계획수립에 팀워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클라이언트 계획수립에 총체적인 접근이 취해지고 있는가?
5. 개별 계획수립에 클라이언트들, 접합한 친척들, 그리고 직접 원조제공자들이 참여하는가?
6. 원조제공자들은 계획수립회의에서 권고된 바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있는가?
7. 주거 시설은 계획 조정자와 키워커 등과 같이 계획을 담당하는 원조제공자들을 임명하고 있는가?
8. 계획들은 클라이언트들의 모든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가?
9. 계획들은 주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는가?
10. 개별 계획수립은 특정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이상 필요없을 경우 종료되는가?
11. 클라이언트 계획들은 잘 기록되고 있는가?
12. 주거 배치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과정이 사용되고 있는가?
13. 클라이언트들이 주거 시설을 떠나는 경우 적절한 원조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는가?

### 5. 욕구 확인과 사정

1. 사정은 개별화되어 있는가?
2. 주거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정 방법들은 대응 가능하고 대응해야 하는 욕구들을 확인하는가?
3. 클라이언트들이 그들의 사정에 참여하는가?
4. 직접 원조제공자들이 사정에 참여하는가?
5.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사정할 때 기준의 정보를 사용하는가?
6. 다음 항목들별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기술에 대한 적절한 사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건강
  - 가족 상황
  - 이동과 교통
  - 인간 발달과 자아 정체성
  - 교육
  - 지역사회 통합

- 자조
  - 의사소통
  - 직업과 일
  - 여가
  - 일상 생활
7. 클라이언트들은 사정의 결과를 보고, 그리고 설명을 받는가?
  8. 특정 형태들의 사정의 결과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 6. 프로그래밍

1. 모든 원조제공자들이 프로그래밍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가?
2.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일치하는가?
3. 프로그래밍을 도입하려는 시도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4. 프로그램들이 아래의 영역들을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는가?
  - 개별적 원조
  - 이동
  - 자아 인식과 자아 개념
  - 집단 생활
  - 주류사회에서의 기능화
  - 여가, 레크리에이션, 창조성
5. 클라이언트들이 그들이 참여하게 될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가?
6. 프로그램 담당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원조들이 제공되고 있는가?

## 7. 클라이언트 기록들

1. 클라이언트 기록들이 보존되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과 그들의 가까운 친척들을 포함하여, 기록들을 볼 필요를 지닌 모든 사람들의 경우 기록들을 볼 수 있는가?
3. 기록들은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관계가 있는가?
4. 기록들은 클라이언트들의 균형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보만을 담고 있는가?
5. 기록들은 최근의 상황을 담고 있는가?

## 8. 집과 같은 주거 시설

1. 주거 환경이 가능한 한 집처럼 되게 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생활 환경이 집과 같다고 여기는가?
3. 집에 있을 때처럼 생활 유형이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가?
4.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직접 원조 제공자들과 함께 하는 가정의 가족 모델이 성인 장애인에게 부적절하게 보이는가?
5. 주거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표식이나 장식, 혹은 다른 특징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9. 사생활 보호

1.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삶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회들이 불충분할 때 클라이언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3. 개별 클라이언트들이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바라고 있는지, 원조제공자들은 그 차이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4. 프라이버시를 위한 기회들이 불충분한 경우, 그것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는 주거 시설내의 공간이나 시간이 있는가?
6. 침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들이 적절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침대 사이의 공간이 충분한가?
7.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옷을 입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최대한의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는가?
8. 직원들과 다른 클라이언트들 모두 어떤 클라이언트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하고 적절한 응답을 기다리는가?
9. 외부 사람이 방문을 하기 전에 클라이언트들과 상의하고 그들의 승인을 얻고 있는가?
10. 클라이언트들이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는가?
11. 개별이든 집단 수준에서이든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12. 클라이언트들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조제공자없이 혼자서 친척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가?
13. 클라이언트들은 동성 혹은 이성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가?
14. 클라이언트들은 전화를 사용할 때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가?
15. 클라이언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직원의 엿보기나 검열로부터 자유로운가?

## 10. 물리적 환경

1. 클라이언트들과 직접원조제공자들이 가구를 선택할 때 참여하는가?
2. 집처럼 가구가 배치되어 있는가?
3. 실내 장식, 예를 들면 벽·커튼·침대커버 등에 적절한 변화가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이 개별적으로 그(녀)의 사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5. 주거 시설은 수리가 잘 되어진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그들 자신의 방을 개인전용으로 할 수 있는가?
7. 적절한 식당·목욕탕·화장실이 있는가?
8. 상점, 도서관, 우체국, 은행, 교회, 스포츠나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 등과 같은 지역사회 편의시설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는가?
9. 주거 시설은 노동 절약형 기구들을 갖추고 있는가?
10. 클라이언트들과 직원은 필요한 도움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가?

## 11. 위험의 가치

1. 원조제공자들은 위험의 위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위험 상황에 적절하게 직면하도록 허용하면서 활동을 하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이 기술들을 발달시켜 그들이 위험 상황들에 맞닥뜨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가?
4. 위험의 위엄을 관계에도 적용하는가?
5. 생활 환경이 비정상적이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보호적이지도 않도록 필요한 모든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위험의 위엄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발달되고 있는가?
7.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이 대처할 수 없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활동하고 있는가?

## 12. 생활의 공유

1. 직원은 클라이언트들과 상의를 하고, 그들을 주거 시설 안에서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이 참여라는 수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있는가?
  - 집단 토론
  - 클라이언트 회의
  - 클라이언트-직원 회의
  - 프로그램 계획수립 회의
  - 사례회의
3.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나 그들이 참여하지 않은 결정 사항들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는가?
4. 클라이언트들과 원조제공자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가?
5. 클라이언트 집단들이 공식적인 협상에서 대표자로서 인정되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 의복
  - 메뉴 짜기
  - 흡연과 음주
  - 돈 지출
  - 친구 선택
  - 취미와 레크리에이션
  - 헤어스타일
  - 여행과 휴일
  - 잡일
  - 종교
7. 클라이언트들은 새로운 클라이언트들과 직원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 13. 건강

1.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의사와 치과의사를 찾아갈 수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은 의료적인 조언이나 도움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4. 의사와 치과의사를 방문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5. 명백한 건강 문제는 필요로 하는 모든 주의를 받고 있는가?
6. 주거 시설은 클라이언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표준들과 실천들로부터 자유로운가?
7.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의료적인 욕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8. 약은 처방된 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9.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왜 약을 처방받는지 이해하며, 부작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10.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닌 클라이언트들의 경우, 그들의 약을 간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11. 주거 시설, 또는 시설내의 단위별로 잘 유지된 구급함을 가지고 있는가?
12. 원조제공자들은 가정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13. 원조제공자들은 발작을 인지할 수 있으며 다를 수 있는가?
14. 클라이언트들은 필요한 전문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가?
  - 물리치료
  - 직업치료
  - 청능훈련
15. 클라이언트들이 그들의 이동이나 생활 스타일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신체 보조구나 장비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가?
16. 클라이언트들과 원조제공자들은 보조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돋고 있는가?

17. 클라이언트들은 피할 수 있는 실금(incontinence)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가?
18. 실금 클라이언트들을 돋는데 사용되는 방법들은 수치심을 주지 않는 그리고 적절한 것인가?

#### 14. 종교적 그리고 영적 욕구

1. 클라이언트들의 영적인 욕구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가?
2. 직원들은 자신의 신앙 체계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갖고 있는 신앙체계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느정도 적합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종교적 신념들과 관련된 비합리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가?
4. 클라이언트들은 자유롭게 그들의 신앙을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이 그들의 신앙을 따를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들이 주거 시설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 제공되고 있는가?
6. 종교가 없는 클라이언트들의 경우 종교적인 준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과로부터도 자유로운가?
  
7.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를 생겨나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가치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표시되고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경우, 목회자들이 주거 시설을 방문하여 개별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15. 안전

1. 클라이언트들은 화재 발생 시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고 있는가?
2. 적절한 곳에서 화재 훈련을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은 작은 화재 발생을 다룰 수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보온 접시, 오븐, 다리미, 세탁기 등과 같은 전기제품 사용법을 알고 있는가?
5. 유독 물질은 적절한 용기에 담겨지고, 정확하게 표시되고,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주거 시설내의 위험·위해 물질 식별법을 배우고 있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은 깨진 유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9. 클라이언트들은 긴급시 구조 요청을 위한 전화를 할 수 있는가?
10. 클라이언트들은 주거 시설 밖에서 기능을 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11. 주거 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누구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 16. 클라이언트의 의복

1.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옷을 소유하고 입을 수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은 경우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입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옷을 가지고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옷 고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옷을 고르도록 격려되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옷 치수를 알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스타일·패션·색깔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의 가게에서 자신의 옷을 구입할 수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옷을 손질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가?
9. 클라이언트들은 세탁기·건조기·다리미 등과 같이 옷을 손질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

10.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옷을 손질하지 못하는 경우, 옷들은 원조제공자들에 의해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가?
11. 클라이언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녀)의 의복에 관심을 가져주는 직원이 있는가?
12. 클라이언트들이 입은 옷은 그들의 용모를 향상시키는가?
13. 클라이언트들이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14.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옷에 제한없이 접근하는가?
15. 라벨이 필요한 경우, 그 라벨은 매력적이고 유별나지 않아야 한다.

## 17. 개인 위생, 몸치장, 용모

1. 클라이언트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기회들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 대소변
  - 세면과 목욕
  - 위생
  - 머리 손질
  - 생리 위생
  - 면도
2.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수건과 비누를 가지고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의 화장품류 · 샴푸 · 기타 머리손질기구 등을 가지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은 목욕과 샤워를 얼마나 할 것이지 결정할 수 있는가?
6. 원조제공자들이 클라이언트들의 위생, 몸치장, 혹은 용모 가꾸기를 도와줄 때, 그들은 존경과 배려를 표시하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용모를 가장 잘 보이게 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은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도록 격려되는가?
  - 그(녀)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 그(녀)의 전체 용모와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은?
  - 유행에 어울리는가?
9.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사회의 미(이)용실에 갈 수 있는가?
10. 여성 클라이언트들은 화장법과 장신구 착용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 18. 개인 소유물

1.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개인 소유물을 보관 할 수 있으며, 그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합당한 경우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개인 소유물을 보관한 장소에 제한없이 접근하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소유물을 그들의 방이나 침실에 마음껏 자유롭게 배열 · 전시할 수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이 받은 모든 선물들은 그들의 개인 소유물로 취급되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나눠 쓰고, 빌리고, 빌려주는 적절한 방법들을 알고 있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연령에 적합한 소유물들을 가지고 있는가?
  - 돈
  - 장난감과 게임
  - 책, 잡지, 만화
  - 화장품류
  - 장신구

- 취미 소재
  - 라디오와 전기 제품
  -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진들
  - 스포츠 장비
  - 휠체어 등의 필요한 교통 수단
8.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9. 개인 소유물이 분실되거나 없어졌다고 보고되었을 때, 적절한 행동이 취해지고 있는가?

## 19. 클라이언트의 금전

1. 클라이언트들은 매주 충분한 수입을 받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돈의 가치와 그것을 관리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는가?
  3.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의 재정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개별화되고 위엄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수입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의 수당에 차이가 있는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그 계산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가?
  6. 보다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경우 자신의 은행 거래 계좌를 관리하도록 하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잠글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돈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9.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돈을 쓸 수 있는 정상적인 모든 기회들을 가지고 있는가?
  10. 클라이언트들은 주거 시설이 제공하여야 하는 물품들을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가?
11. 주거 시설은 별금을 포함한 처벌 체제가 없는가?
  12. 클라이언트의 돈이 쓰여지거나 저축되기 전에 클라이언트의 허락을 받는가?

## 20. 흡연과 음주

1.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실 수 있는가?
2. 흡연과 음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각자의 선호를 실현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행동통제의 한 방법으로 담배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는가?
4. 원조제공자들은 담배와 술 사용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기준을 부과하는 것을 자제하려고 노력하는가?
5. 술이 주거 시설에서의 사회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가?

## 21. 관계

1. 클라이언트들에게 주거 시설 내에서와 밖에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2. 생활 배치와 일상생활을 설정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하는가?
3. 클라이언트들은 관계를 발달시킬 때 지원을 받는가?
4.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 사이의 대화를 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가?
5. 클라이언트들은 이성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사적으로 친구들을 접대할 수 있는가?
7. 원조제공자들은 성적인 관심과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것만큼 장애인에게도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8. 성교육을 하고 있는가?
9.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사회적으로 적합한 성행위를 격려하는가?
10.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가?

11.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친밀한 측면들과 관련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가?
12. 주거 시설은 정상적인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사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하며,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가?
13.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이 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들과 상담하고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는가?
14. 클라이언트들은 성과 인간 관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하여 지원적인 맥락에서 토론할 수 있는가?
15. 인간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문제들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16.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도덕적 가치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회피하는가?

## 22. 일상 생활

1. 클라이언트들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인 것으로 서술될 수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합당한 경우 그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고 있는가?
3.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화장실에 가고 잠자리에 드는 등의 기본적인 하루 일과가 개별화되어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원조를 받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6. 하루의 주요 이벤트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일치하는가?
7.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평일과는 다른 그리고 보다 편안한 일과가 있는가?
8. 일상생활의 의례에 관한 측면들이 점검되고 있는가? 만약 부적절한 점이 발견되는 경우, 수정되는가?
9. 일상생활은 이를테면 방문객 내방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연한가?
10. 원조제공자들은 직함이 아니라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가?
11. 원조제공자들은 일상복을 입고 있는가?

## 23. 식사

1. 메뉴를 짤 때, 클라이언트들이 참여하는가?
2.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가?
3. 클라이언트들이 누구와 자리를 함께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가?
4. 식탁에 앉는 사람이 8명을 넘지 않는가?
5.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즐거운 자리인가?
6. 클라이언트들은 서두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스스로 먹도록 격려되는가?
8. 하루 세끼의 식사시간은 적절한가?
9. 공식적인, 매일 매일의, 그리고 비공식적인 식사의 적절한 혼합이 있는가?
10. 식사는 매력적으로 보이고, 다양하며, 균형이 잘 잡혀 있는가?
11.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경우 그들에게 특별식이 제공되는가?
12.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13. 거주자들이 식사시간에 스스로 시중을 드는가?
14. 음식은 적당한 온도로 제공되는가?
15. 음식은 충분한 양이 제공되는가?
16. 추가로 두 그릇을 먹을 수 있는가?
17. 직원들은 클라이언트들과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는가?
18. 클라이언트들은 적절한 식사시간에 우아하게 식사를 하도록 격려되는가?

19. 적합한 수저와 식기가 사용되고 있는가?
20. 클라이언트들은 수저 사용법을 배우는가?
21. 식사시간은 유연한가?
22. 클라이언트들은 식사시간에 맞춰오지 못한 경우에도 식사를 할 수 있는가?
23.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식사조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가?
24. 가능한 경우, 클라이언트들은 식사준비에 참여하거나 실제로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가?
25.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할 때 간식이 제공되는가?
26. 클라이언트들은 끼니 사이에 간식을 준비할 수 있는가?

#### 24. 가사일

1. 클라이언트들은 개인적인 욕구나 즉석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 상황들과 관련된 일들 이외에, 그들이 허드렛일을 할 것인 지의 여부를 선택하는가?
2. 클라이언트들이 일과 중 대부분을 그들의 주거시설의 유지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보내는 경우, 이것은 그들의 개별 계획과 일치하는가?
3. 클라이언트들이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그들은 적절한 보수를 받는가?
4. 치료라는 용어를 가사일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가?

#### 25. 축일

1. 클라이언트들의 생일날이 기억되고 있는가?
2. 생일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시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축하되고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이 그들의 생일날을 어떻게 보냈으면 하는지를 결정하는가?
4. 크리스마스는 정상적인 방식으로 축하되는가?
5. 클라이언트들은 크리스마스를 주거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내도록 부당한 압력을 받는가?
6. 주거 시설에서의 생활 유형과 속도는 공휴일의 경우 적절하게 변화하는가?
7. 클라이언트들은 매년 휴가를 갖는가?

#### 26.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시설

1.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시설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이 이러한 주거시설을 개발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3.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시설은 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4.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시설로서 적합한 집이 선택되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의 가까운 친척들이 주거 생활에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6. 주거시설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직원을 배치하고 있는가?
7. 클라이언트들이 주거를 선택할 때, 적절한 과정이 사용되고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이 주거시설로 이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이주를 할 것인지 를 결정하는가?
9. 클라이언트들이 소규모 지역사회 주거시설에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10. 클라이언트들이 지역사회 주거시설에서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형을 결정하는가?
11. 주거시설에서의 생활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들이 제공되고 있는가?
12. 원조제공자들은 이웃들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적절하게 관여하는가?
13. 빙자리가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들과 직접 원조제공자들이 새로운 식구를 결정하는데 참여하는가?

14. 직접 원조제공자는 상급자로부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는가?

## 27. 가족 참여

1. 원조제공자들은 왜 가족 참여가 그토록 중요한지의 이유들을 인식하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친척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그들과의 비공식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친척들의 관심을 환영하고 그들의 참여를 격려하고 있는가?
4. 원조제공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있는가?
5. 원조제공자들은 친척들의 생활상황들, 그들이 마주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에 대한 이해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가?
6. 가까운 친척들과 적절한 접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7. 원조제공자들은 친척들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8. 적절한 경우, 친척들은 클라이언트들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9. 친척들이 주거시설을 방문하였을 때 즐거운 환대를 받는가?
10. 방문 배열은 비공식적이며 유연하고, 클라이언트들·친척들·원조제공자들에게 즐거운 경험으로 되고 있는가?
11. 친척들은 방문을 하였을 때 클라이언트들과 원조제공자들에게 바로 접근하고 있는가?
12. 친척들이 아래의 것들을 할 수 있는가?
  -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적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는 것
  - 주거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
  - 다른 클라이언트들과 이야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
  - 클라이언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
  - 그들이 먼 곳에서 방문을 하였을 때, 식사를 대접받거나 하룻밤 묵어 가는 것
13. 클라이언트들은 규칙적으로 집을 방문할 수 있는가?
14. 클라이언트들이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여행하는 동안 원조를 제공하고 있는가?
15.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들이 집에 있을 때 친척들에게 특수한 프로그램들을 유지하는 법을 가르치는가?
16. 원조제공자들은 방문 횟수가 줄어드는 친척들과 접촉하는가?
17. 친척들은 클라이언트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연락을 받고 있는가?

## 28. 지역사회 생활로의 통합

1.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지역사회 생활 속으로 통합시키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의 통합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행동을 취하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큰 집단으로 클라이언트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회피하는가?
4. 주거시설 밖에 있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사회 생활에 적합한 행동들에 대해 교육을 받는가?
6. 어떤 차량에도 클라이언트들에게 스티그마가 될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29. 공식적인 방문자들

1. 주거시설 방문자들에 앞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가?
2. 직접 원조제공자와 클라이언트들이 방문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3. 방문자들의 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가?
4. 방문자들에게 그들에게 기대되는 바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는가?

5. 방문자들에게 적절한 환대를 제공하는가?
6. 시설적인 실천들을 점차 없애려는 시설 개방의 날이나 축제와 같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30. 자원봉사자들

1. 원조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주거시설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유능한 원조제공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선발·훈련·배치·지원에 시간을 투여할 때에만 성공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기대가 현실적인가?
4. 원조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이 주거시설과 클라이언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5. 한 명의 원조제공자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전체를 맡고 있는가?
6.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때 다양한 접근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7. 원조제공자들은 자원봉사자들을 선발할 때 적절하고 효과적인 과정들을 사용하는가?
8. 자원봉사자들은 주거시설 생활에 참여하기 전에 적절한 훈련을 받는가?
9. 자원봉사자들은 일단 참여하게 되면 그들에게 지원이 제공되는가?
10. 자원봉사자들과 관련된 문제들은 자원봉사자들을 비난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장점에 의거하여 다루어지고 있는가?

### 31. 아동의 욕구

1. 아동용 시설은 성인용 시설과 분리되어 있는가?
2. 아동은 소규모 가족형 집단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가?
3. 주거시설에서의 생활 유형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살고있는 아동의 생활 유형과 유사한가?
4. 아동에게 안전감을 줄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구조물이 있는가?
5. 원조제공자들은 아동의 기본적인 양육 욕구에 대응하고 있는가?
  - 신체적 보호
  - 정서적 친근감과 애정
  - 개별적인 주의
  - 안정감
  - 사회화
  - 안전
  - 놀이
6. 아동들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런 한 부분으로 기본적인 자조 기술들을 배우고 있는가?
  - 옷입기
  - 대소변보기
  - 식사
  - 개인 위생
7. 아동들은 일상생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되는가?
  - 헤드렛일
  - 쇼핑
  - 식사 준비
8. 아동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령에 부합하는 장난감과 게임에 제한없이 접근하고 있는가?
9. 아동들은 충분한 야외 놀이터와 그네·자전거 등과 같은 놀이기구를 가지고 있는가?
10. 아동들은 주거시설의 어느 곳에도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가?

11. 원조제공자들과 아동들은 특별행사 · 여행 · 외출을 함께 하는가?
12. 어느 곳에서든지 아동들은 일반학교에 통합되고 있는가?
13. 직원은 아동의 학교활동을 도와주고 있는가?
14. 아동들은 학교와 관련된 정상적인 모든 물품들을, 예를 들면 교복, 책, 학습여행과 활동에 필요한 돈을 제공받고 있는가?
15. 직원은 학교 직원과 원조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16. 아동들은 그들의 친부모와 규칙적으로 접촉하고 있는가?
17. 아동들은 아프거나 의기소침할 때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가?
18. 아동들은 그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용돈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가?
19. 아동들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예를 들면 영화관 · 가게 · 도서관 · 사교 클럽 · 수영장 · 스포츠센터 · 은행 · 우체국 · 병원 등을 방문하는가?
20. 아동들은 애완동물을 가지고 기를 수 있는가?

### 32. 성인의 욕구

1. 성인들과 함께 일하는 원조제공자들은 그들의 욕구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 성인들에게는 점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성인들이 그들로서는 터무니없고 수용할 수 없는 태도 · 취향 · 패션을 보였을 때 지나치게 심판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4. 원조제공자들은 성인들이 그들이 지난 장애에 적응하고 있을 때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가?
5. 원조제공자들은 성인기 장애인들이 열등감에 기초하지 않은 자아 개념을 발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6. 성인들은 적절한 성교육을 받고 있는가?

### 33. 노인의 욕구

1. 원조제공자들은 노인을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노인들에게 수동적인 삶보다는 상당한 활동에 참여시키는 일상생활 유형을 제공하려고 하는가?
3. 주거시설에서의 노인들의 삶은 가능한 한 정상적인가?
4.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적 개념들을 제거하려는 모든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

### 34. 일

1. 원조제공자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일이 지니는 중요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이 주거시설의 보수작업에 전일제로 일을 하는 경우,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가, 그리고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적합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4. 클라이언트들은 그들의 첫 번째 직업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5. 클라이언트들이 일단 고용이 되면,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6. 원조제공자들은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감과 충족감을 주는 대안적인 활동을 찾을 수 있도록 돋고 있는가?

### 35. 여가

1. 원조제공자들은 지역 인근에 있는 여가 자원들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여가 활동이 가능한지를 알고 있는가?
3. 클라이언트들이 자신들의 여가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하는가?
4. 클라이언트들이 여행·외출·공휴일을 포함하는 여가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가?
5. 개인적인 흥미와 취미들이 주거 시설 내에서 조달되고 있는가?
6. 모든 여가 활동이 연령에 부합하는가?
7.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그들 자신의 여가에 관한 관심을 확대하도록 격려되고 있는가?
8. 클라이언트들은 지역사회에 기반하는 여가 일에 참여하는가?
9. 클라이언트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집단으로만 지역사회에서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가?
10. 원조제공자들은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시키려고 지역사회 자원들을 방문하고 있는가?
11. 직원들이 필요할 때 클라이언트들과 함께 가는가?
  - 교통을 제공하기 위해서
  - 적절한 기술들과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 동료의식과 우정을 위해서
12. 클라이언트들은 주거 시설을 떠나 매년 휴가를 갖는가?
13. 휴가는 다양하고 적절하게 클라이언트들에 의해 선택되는가?

### 36. 문제 행동

1. 원조제공자들은 무엇이 연령에 부합하는 것이며, 무엇이 연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2. 클라이언트들은 연령에 부합하는 행동에 대해 배우는가?
3. 원조제공자들의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인가?
4. 원조제공자들의 기대는 개별 클라이언트들에게 알맞도록 충분히 유연한가?
5.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충분한 인내심을 갖고 그리고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가?
6. 클라이언트들은 주류사회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고 있는가?
7. 원조제공자들과 클라이언트들은 주거 시설 내에서의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규칙들을 설정하는데 함께 일하고 있는가?

### 37. 원조제공자의 역할과 자질

1. 원조제공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현대적인 접근들과 그것들이 기반하고 있는 철학들을 숙지하고 있는가?
2. 원조제공자들은 그들과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에서 평등을 추구하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그들이 클라이언트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
4.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있는가?
5. 원조제공자들은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들을 위해 옹호자로서 행동하는가?
6. 원조제공자들은 개별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키워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7.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 대하여 개인적인 위임을 받고 있는가?
8.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원조를 개별화하고 있는가?
9. 원조제공자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전문가적인 행동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있는가?
10.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가?
11. 원조제공자들은 적합한 방식으로만 클라이언트들을 돋고 있는가?
12.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과 명백하고 가치있는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

### 38. 주거 시설의 관리

1. 중견 워커들은 운영 과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가?
2. 관리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안팎의 요소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3. 관리자들은 관리 스타일, 워커들을 다루는 서로 다른 방법들 사이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관의 이슈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4. 관리자들은 어떤 관리 스타일이 그들의 기관 혹은 직원들에게 적합한지를 알고 있는가?
5. 관리자들은 효과적인 인간관리 스타일을 개발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가?
6. 관리자들은 워커들을 다루는 지침으로 윤리규약을 공식화하였는가?
7. 원조제공자들의 고용에 대한 서비스 조건들이 명문화되어 있는가?
8. 관리자들은 직원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데 능력이 있는가?
9. 신입 원조제공자들을 위한 적절한 안내 과정이 있는가?
10. 원조제공자들은 그들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하는가?
11. 관리자들과 원조제공자들이 팀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가?
12. 관리자들이 팀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
13. 관리자들은 그들의 시연(performance)이 팀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는가?
14. 관리자들은 팀원의 팀워크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는가?
15. 관리자들은 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16. 원조제공자들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17. 관리자들은 원조제공자들 및 클라이언트들과 효과적으로 의사교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18. 효과적인 의사교환 네트워크 있는가?
19. 관리자들, 원조제공자들, 클라이언트들 사이에 연린 의사교환이 있는가?
20. 정기적인 직원 회의와 팀 회의가 있는가?
21. 직원 회의와 클라이언트 계획 수립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회의들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22. 관리자들과 원조제공자들은 스트레스의 징후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3. 관리자들과 원조제공자들은 주거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소들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4. 관리자들과 원조제공자들은 원조제공자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5. 관리자들과 원조제공자들은 개인, 집단, 기관에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26. 관리자들은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27. 관리자들은 어떤 원조제공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을 때 현실적인 신념들에 입각하여 움직이는가?
28. 문제가 많은 어떤 워커를 대면할 때, 관리자들은 그(녀)의 행동에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탐색하는가?
29.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워커들을 다루려고 행동을 취할 때 관리자들은 전문적인 접근들을 사용하는가?

### 39. 주거 상황의 변화

1. 관리자들은 주거 시설에 변화가 왜 필요한지 이해하고 있는가?
2. 관리자들은 변화를 불러일으키려고 시도를 할 때, 그들은 적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가?
3. 관리자들은 변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가?

4. 원조제공자 집단이 주거 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5. 직원들이 변화에 대해 저항하는 이유들을 이해하고 이것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

#### 40. 직원 훈련

1. 모든 수준의 위커들이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를 인정하고 있는가?
2. 주거 시설이 시설의 한 부분인 기관의 경우 개별 원조제공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시설 외부의 훈련 프로그램·회의 등에 참여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받고 있는가?
4. 원조제공자들은 그들이 지식과 기술들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가?

#### 41. 직접 원조제공자들의 근무 규칙

1. 중견 위커들을 포함하여 주거 시설에서 일하는 원조제공자들은 직원 중심적인 직무와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직무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줄 아는가?
2. 클라이언트들의 욕구가 원조제공자들의 근무시간에 반영되어 있는가?
3. 주거 시설이 언제든지 특히 바쁜 시기에 직원들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직원들이 있는가?
4. 원조제공자들이 적절하게 일을 하고 쉴 수 있는가?
5.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당번을 바꾸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가?
6. 원조제공자들이 특정 주거 시설이나 단위에서 영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기관의 편의성이나 일반적인 인사 문제 때문에 규칙적으로 근무지를 옮기지는 않는가?
7. 원조제공자들의 근무시간 동안에 열리는 회의 때문에 근무 시간이 허비되는가?

#### 42. 운영위원회

1. 주거 시설은 적절한 운영위원회들을 두고 있는가?
2. 그러한 운영위원회는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지고 있는가?
3.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의원인가, 특히 클라이언트들을 대표하는가?
4. 위원의 임기가 있는가?
5. 위원회는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들과 원조제공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6.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클라이언트들 및 직접 원조제공자들과 접촉하고 있는가?

#### 43. 책임

1. 기관 또는 주거 시설의 전체 원조제공자들이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숙지하고 있는가?
2. 서비스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가?
3. 원조제공자들은 옹호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있는가?
4. 시민 옹호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
5. 원조제공자의 역할에는 옹호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는가?
6. 원조제공자들은 고충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대응할 필요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7. 기관 또는 주거 시설은 명문화된 고충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 별첨

8. 고충처리 절차는 주거 시설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가?
9. 심각한 고충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 시설에 관련이 없는 원조제공자들에 의해 다루어지는가?
10. 클라이언트들은 주거 시설에서의 삶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11. 직접 원조제공자들은 클라이언트 원조의 질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 추가비용의 문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1. 장애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의 하나이다.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라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을 국가가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라 함은 개인의 건강이나 경제생활에 위협이 되는 개인의 생활상의 위험이지만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회공동체의 위험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그 위험의 범주가 점점 확대되는 경향이다. 종래에는 주로 노령, 질병, 장애, 분만, 실업 등이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197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종래의 범주외에 사용자의 파산이나 범죄에 의한 희생 등도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되어 입법화되는 추세이다. 장애인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추가적인 비용의 소요 또는 별도의 훈련이나 서비스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장애는 생활상의 위협이 되며, 따라서 종래부터 장애는 사회적 위험의 일종으로 인정되어 사회보장권의 보호대상이 되어 왔다.

## 2.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은 추가비용의 발생이 필수불가결이다.

보통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되고 있는 노령, 질병, 장애, 분만(양육), 실업 등을 보면 모두 다 추가비용의 발생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인 분만의 경우를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생명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양육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분만 이전에는 필요치 않던 비용이었다. 따라서 복지선진국에서는 출생에서부터 가족수당 내지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비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위험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나 노령, 질병, 장애, 분만(양육), 실업 등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당면하게 될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사람은 누구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고,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 등으로 영구적 장애인이 될 수 있으며, 직장다니다 실직할 수 있고, 나이를 먹으면 기력이 쇠하여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은 새로운 비용의 발생을 수반하므로(다만 실업등은 소득의 감소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함), 비용보전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 비용의 보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로 사회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 3.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청구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은 누구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권)가 있다. 사회보장권이라 함은 장애·질병·노령·실업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해 일정한 내용의 급여(급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보장권의 개념적 요소로는 사회적 위험, 요보호상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및 국가의 적극적 급부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필요하게 되는 사회생활상의 추

가적인 비용이나 서비스(유형·무형 포함)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고, 국가는 이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급부의무가 있다.

이 사회보장권이 추상적 권리인가, 구체적 권리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아직 까지 우리나라 법원이나 다수의 학설은 추상적 권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가 사회보장권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성의 확보없이는 사회보장의 이념은 한낱 구호에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보장권의 내용에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보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추가비용의 보전은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다.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은 결국 장애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이는 사회보장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이다. 필요한 장애인에게 휠체어나 흰지팡이를 주어 이동상의 제약을 없애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동상의 평등실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 택시탈 수 있는 추가비용을 지원한다면 그 역시 실질적 평등실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추가비용의 보전을 국가가 나 몰라라 한다면 이는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차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벽을 헐기 위해서는 이러한 추가비용이나 필요한 추가서비스 이용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5. 추가비용의 보전방법은 사회수당식 연금방식이 원칙이다.

추가비용의 보전방법은 사회수당으로서 해줌이 원칙이지만, 국가의 능력여하에 따라 사회부조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사회수당식과 사회부조식의 가장 큰 차이는 자산조사 내지 소득조사를 통해 일정소득 미만자에게만 혜택을 주는가의 여부이다. 사회수당식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수회부조식은 한정적이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사회부조방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 비용의 보전정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이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장애로 인한 초기비용을 온전히 보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비용의 보전문제가 무기여 장애인연금을 주장하는 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